

제325회 정례회

2013. 12. 10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산하단체, 도에서 출자·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”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, 지역 내 중소건설 업체 보호 및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하수급인의 시공능력,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” 설치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

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주기관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,

-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,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,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 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